

더불어민주당, ‘조폭연루설’ 제기 박철민과 장영하 검찰 고발 ... 공직선거법 및 정통망법 위반

- 6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발장 제출 ... 허위로 조작된 ‘국제마피아파 조직도’ 근거로 허위 사실 공표
- 국제마피아파 조직도 고문에 이 후보 이름 기재 ... 허위사실 알면서도 당선 막기 위한 범행 판단
- 고발인 조사 불필요할 정도로 피고발인 범죄 혐의 명백 ... 피고발인에 대한 즉시 소환 조사 요구

더불어민주당이 ‘국제마피아파 조직도’ 를 허위로 조작하고, 이를 근거로 이재명 대선 후보와 조폭과의 연루설을 제기하는 등 유튜브 방송을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박철민 씨와 장영하 변호사 등 2명을 공직선거법 및 정통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특히 민주당은 고발인 조사가 불필요할 정도로 범죄 혐의가 명백한만큼 피고발인들을 즉시 소환 조사해 줄 것으로 요청했다.

민주당은 지난 6일 이들 2명에 대한 고발장을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박철민은 ‘제3기 국제마피아파 조직도’ 라는 것을 작성하면서 고문이라고 표시된 칸에 이 후보의 이름을 기재하는 등 허위의 내용을 기재했다” 라며 “장영하는 박철민으로부터 전달받은 조직도를 펼쳐 들고 지난 12월1일 성남일보 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내용의 방송을 진행했다” 고 밝혔다.

이어 “장영하가 이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방송을 한 것은 오직 박철민의 진술 및 조직도에 의존한 것” 이라며 “구체적인 소명자료의 제시없이 오로지 ‘카더라’ 식의 전문진술만을 제시하며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유포했다” 고 덧붙였다.

아울러 “장영하, 박철민은 해당 발언이 허위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이 후보를 비방해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유포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라며 “고발인 조사가 불필요할 정도로 관련 증거와 박철민, 장영하의 범죄 혐의가 명백하므로 곧바로 박철민, 장영하를 소환해 허위사실 유포와 기사 작성 경위 등을 수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시 소환조사해 엄정한 책임을 물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피고발인 2명은 신빙성이 없는 돈다발 사진 등을 근거로 이 후보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하는 등의 혐의로 민주당과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고발된 바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한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에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